

대한호신협회 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



대 한 호 신 협 회

대한호신협회 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

제정 2026년 1월 10일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대한호신협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 정관에 의거하여 지부의 설치, 조직,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지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지부의 명칭은 "대한호신협회 ○○지부"(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명칭)라 칭한다.

제3조(지위 및 소재지)

- ① 지부는 본회의 산하 기구로서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한다.
- ② 지부의 사무소는 해당 지부의 관할 행정구역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형 호신·위기대응·재난대응 교육 및 지도
2. 관할 구역 내 호신·안전훈련 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
3. 호신·안전 분야 지도자·심판·강사 양성 지원, 승단 심사의 집행 및 관리
4. VR·AI 등 디지털 기반 안전·호신 교육 콘텐츠의 활용 및 시연
5. 지역 단위 대회, 캠프, 워크숍, 체험 행사 개최 및 본회 주최 행사 참가 지원
6. 지방자치단체, 관할 교육청, 지역 군·경,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

력사업

7. 관련 연구 지원, 자료의 배포, 지역 내 홍보 활동
8. 관할 구역 내 회원 단체의 관리·지원 및 육성
9. 기타 본회가 위임하거나 지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지부 임원회
(또는 총회)가 의결한 공익사업

제2장 지부의 설치 및 승인

제5조(설치 단위)

지부는 특별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 및 시, 군, 구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설치 요건)

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본회가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자
2. 20평(66㎡) 이상의 교육 공간과 사무 처리가 가능한 설비를 갖춘 곳
3. 관할 지자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시설
4. 해당 지역 내에 본회가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정회원 20인 이상을 확보한 곳

제7조(승인 절차)

① 지부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부 설치 신청서 1부
2.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 각 1부
3. 시설 현황서, 임대차계약서 각 1부
4. 사업계획서 및 수지에산서 1부

5. 회원 20인 이상의 명부(성명, 연락처, 생년월일 기재)

② 사무국은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③ 이사회는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의결하며, 회장은 승인된 지부에 대하여 인준서를 교부한다.

④ 승인을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부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3장 조직 및 임원

제8조(임원 구성)

①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지부장 1인
2. 부지부장 2인 이내
3.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
4. 감사 1인
5. 사무장 1인

② 지부장은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여 본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.

③ 그 외 임원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지부 총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
제9조(임기)

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직무)

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 업무를 총괄하며 지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감사는 지부의 회계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- ③ 사무장은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.

제4장 지부 총회

제11조(구성 및 소집)

- ① 지부 총회는 해당 지부 소속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정기 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, 임시 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12조(의결 사항)

지부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지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
2. 지부장 선출 및 임원 선임 동의
3. 사업 계획 및 예산, 결산의 승인
4.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5장 운영 및 관리

제13조(회계)

- ① 지부의 회계는 독립 재산제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지부의 회계 연도는 본회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- ③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 및 사업 실적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권리와 의무)

- ① 지부는 본회의 명칭 사용권, 각종 행사 참여권, 교육 연수 참여권, 우수 회원 포상 추천권 등을 가진다.
- ② 지부는 본회 정관 및 규정 준수, 회비(월회비 또는 연회비) 납부, 총회

및 이사회 의결 사항 이행, 정기 보고의 의무를 진다.

제15조(지도·점검)

본회는 필요 시 지부의 행정 및 회계 전반에 대하여 지도·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지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6장 포상 및 징계

제16조(포상)

본회는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한 지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7조(징계 및 승인 취소)

① 본회는 지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의로 경고, 직무 정지, 지부 승인 취소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
2. 회비 및 분담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경우
3. 교육 및 연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한 경우
4. 1년 이상 지부 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5. 본회의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

② 승인이 취소된 지부장은 향후 5년간 본회 지부 설치를 신청할 수 없다.

제7장 보칙

제18조(해산 및 청산)

① 지부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지부 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분은 지부 총회의 의결에 따르되, 본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19조(준용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지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6개월 이내에 미비된 요건(임원 구성 등)을 보완하여야 한다.